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방안

2005. 7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Ⅰ. 연구의 개요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의 외국인 신분 등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에서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고통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05년 상반기에 실시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사업은 전국 규모로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국제이주분야 전문가를 연구책임자(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로 하고 사회심리와 관련지어 계량적으로 연구할 사회학자, 국제이주를 여성과 문화접변의 문제로 접근할 인류학자, 보건복지 서비스제공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할 사회복지학자, 의료실태를 분석할 산업의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팀을 구성하였다.

□ 조사·연구내용은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 실태,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일본과 대만의 관련 정책파악 등이며,

□ 연구방법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945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7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을 병행하였고, 중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 6명,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심층면접을 진행함과 아울러, 다른 나라 사례 분석을 위해 일본·대만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Ⅱ. 주요 조사 내용

1.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 인구학적 배경

○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는 34%로 베트남 여성(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에게 심함

○ 국제결혼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임

○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임: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

○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정도는 중국한족(28%)에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동포(14%)로 나타남

○ 도시지역 14%, 농촌지역 45%가 시댁과 함께 살고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 1980년대 : 통일교(일본여성) ⇒ 1992년 이후 : 중국동포, 중국한족 ⇒ 1990년대 중반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 1990년대말 베트남, 구소련에서 결혼 이주

○ 입국사유 : 결혼이주 77%, 취업 및 방문 등의 이주 후 결혼 23%,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입국한 이주여성과의 결혼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안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결혼(여성결혼이민자의 2/3), 중국동포는 혈연집단, 그 외의 나라는 친구집단

□ 국제결혼 과정

○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음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이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함

○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

○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그리고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이며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임

○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73%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감행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함

〈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

(단위: %, 명)

구 분	소개 (460)	결혼중개업체 (119)	종교단체 (142)	직접 만났음 (150)	기타 (52)
아주 정확히 일치	26.3	27.7	23.9	34.0	25.0
대체로 일치	33.9	16.8	31.0	36.7	30.8
보통	18.9	11.8	28.2	14.0	23.1
별로 일치하지 않음	12.8	11.8	7.7	13.3	11.5
전혀 일치하지 않음	8.0	31.9	9.2	2.0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

(단위: %, 명)

구 분	소개 (217)	결혼중개업체 (67)	종교단체 (44)	직접 만났음 (67)	기타 (21)
남편 가족관계	29.7	25.0	31.4	20.4	30.0
남편 재산	34.2	54.4	26.5	35.7	10.5
남편 직업	33.3	43.9	50.0	25.0	10.5
남편 학력	19.2	17.3	38.9	12.5	5.6
남편 소득	47.7	49.2	45.9	32.1	10.5
남편 건강상태	24.7	40.4	39.4	4.1	16.7
남편 성격	57.1	59.7	56.8	35.8	57.1
기타	35.0	25.0	41.2	54.2	69.2

□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혼일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음

□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중임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 52%, 공장근로자 14%, 교사나

자영업자 등 13%임

○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서비스종사와 관련)

○ 근로소득은 월 평균 140만원이며, 중국동포는 월평균 150만원(시간당 1만 2천원) 정도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0만원 정도 높은 편임

○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대체로 찬성,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임

○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및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인 것으로 나타남. 또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녀 양육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음

○ 현재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88%, 현재 미취업중인 경우에도 93%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욕구가 높음

○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 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음

2. 결혼생활

□ 혼인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

○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가족(초혼 77.7%, 재혼 22.3%, 2002년 기준)에 비해 재혼가족 비율이 높음. 가구 구성의 특징으로 부부가족(39%)의 비율이 높고,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19.6%)도 높음

○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

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 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100점을 완전히 동의한다로 보면, 각각 85점, 82점 정도로 다른 가족가치문항에 비해 높음

○ 일본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보다 이혼, 노부모부양, 시댁식구에 대한 배려에서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몽골과 중국한족 부인들이 높게 나타남

□ 부부관계

○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인 부인의 경우 53%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고 있음.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함

○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임.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음

○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임.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를 많이 지적함

○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를 가장 많이 지적하며, 두 번째가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19%)인 것으로 나타남.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 됨. 특히 이혼자의 경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됨

○ 부부폭력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임.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률이 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20%), 신고할 줄 몰라서(14%), 경찰 문제해결 능력 의심(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을 들고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14%정도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20~40%정도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거의 30~50%로 만족도가 낮음

○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34%이며,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함

〈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

(단위: %, 명)

구 분	전체 (921)	기혼 (755)	별거 (76)	이혼 (38)	동거 (32)	사별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24.859, p<.000

〈 결혼유형별 부부폭력 〉

(단위: %, 명)

구 분	전체 (930)	둘 다 초혼 (575)	남-초혼/여-재혼 (74)	남-재혼/여-초혼 (127)	둘 다 재혼 (155)
모욕적인 말	31.0	23.5	43.8	37.8	47.1
때리겠다고 위협	18.6	11.8	27.4	28.6	31.6
물건 던짐	23.7	18.8	27.0	31.0	34.2
세게 밀기	13.7	7.7	21.9	22.8	24.5
손발로 구타	13.3	7.1	21.9	27.8	20.0
성행위 강요	13.9	8.0	26.0	27.0	19.4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4.5	20.5	21.4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

(단위: %, 명)

구 분	전체 (948)	중국 동포 (449)	중국 한족 (164)	일본 (101)	필리핀 (78)	베트남 (66)	태국 (20)	몽골 (15)	구소련 (30)	기타 (25)
모욕적인 말	30.5	25.7	57.3	29.0	20.8	9.1	47.4	26.7	26.7	26.9
때리겠다고 위협	18.4	15.1	41.7	13.9	11.7	9.1	15.8	20.0	6.9	4.0
물건 던짐	23.5	19.2	37.8	34.7	14.3	4.5	30.0	20.0	26.7	34.6
세게 밀기	13.4	11.6	25.8	8.0	13.0	1.5	21.1	13.3	17.2	8.0
손발로 구타	13.1	12.1	21.5	14.0	6.5	6.1	10.5	13.3	13.8	12.0
성행위 강요	13.8	12.3	31.3	11.0	9.1	4.5	5.3	.0	3.4	4.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3	6.9	28.0	2.0	7.7	1.5	.0	.0	3.3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녀관계

○ 전체 응답자 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임. 한국인과 결혼이 재혼인 여성(229명)중 88.2%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은 16.6%임.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자녀를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75.4%(144명)이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45%)를 가장 많이 지적함

○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음

○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음

○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임.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전처소생의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자녀들과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며,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됨

○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 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음

□ 부모・친척관계

○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하고 있음

○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6%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통화한다는 응답자들도 6.5%임. 특히 중국 동포들이 다른 나라출신 여성들보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더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

가구소득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143,340**	**67.7**	**805,845**	**61.5**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563**	**0.9**	**5,155**	**0.3**	**20,832**	**1.5**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894**	**1.7**	**23,881**	**1.4**	**25,808**	**2.0**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5,508**	**0.9**	**14,839**	**1.1**
기타소득	**470,758**	**31.5**	**501,266**	**29.7**	**443,203**	**33.8**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1,689,511**	**100.0**	**1,310,528**	**100.0**

3.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 경제적 생활실태

○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 소득원도 근로소득으로 나타남.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는 57.5%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

(단위: %, 명)

구 분	전체 (907)	중국 동포 (302)	기타 외국 (605)
거의 매달	4.5	2.8	6.1
서너 달 정도	2.6	2.8	2.4
한두 달	8.4	5.0	11.5
거의 없음	84.5	89.5	80.0
계	100.0	100.0	100.0

○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임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주택에 대한 불만이 24.3%이며, 화장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 첫째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두 번째는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이상을 상회하지 않음. 특히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아래 표의 13개 모든 항목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단위: %)

구 분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 지원	10.2	89.8	3.9	96.1	16.7	83.3
의료비 지원	11.6	88.4	7.3	92.7	16.2	83.8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7.2	92.8	2.9	97.1	11.8	88.2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	5.9	94.1	3.6	96.4	8.4	91.6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83.7	9.9	90.1	23.3	76.7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2.0	88.0	4.5	95.2	19.7	80.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

○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은 매우 낮음

-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됨
-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 중 55.0%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됨

○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문제를 일자리를 통해 극복하고 있음.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4.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 의료보장체계 활용

○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

○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의료보장의 형태 〉

(단위: %, 명)

구 분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544)	(216)	(203)		(52)	(73)
직장가입건강보험	28.3	26.0	33.6		36.2	15.0
지역가입건강보험	43.3	44.2	37.9		46.8	53.0
의료급여 1종	3.1	0.0	4.4		1.9	9.4
의료급여 2종	1.7	1.5	0.7		1.9	5.1
아무 것도 없다	23.6	28.3	23.4		13.2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

(단위: %, 명)

구 분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2)	(293)	(246)	(66)	(96)
치료 포기한 적 있음	18.0	17.4	19.7	14.9	17.2
없음	82.0	82.6	80.3	85.1	8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또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혼이민자의 질병 상태

○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임. 그 중에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하게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들이 있음

□ 정신·심리적 건강상태

○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 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성 건강 상태

○ 농촌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이 25%, 자연유산 13%임, 낙태 이유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으로 응답

Ⅲ.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 2003년 현재 74만여의 전체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은 4만여 건임.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문제, 이혼 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남

○ 현재 일본의 국제결혼은 자유연애가 아닐 경우 대부분 결혼상담소를 통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사이트도 급증. 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제도는 없음. 국제결혼에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 위반'이 되고,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위반'이 됨

○ 수혜대상의 조건 혹은 자격에 관한 우선순위 :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일코리언과 닛케이진 등과 같은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 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일본 국적법상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일본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됨.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과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됨

○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자 함. 공공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1차적 책임을 부과

○ 다문화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사회복지는 일본사회 자체의 변화추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시민대상 타문화이해 강좌 등이 있음

□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 대만의 결혼이민자는 중국대륙 〉 베트남인 순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 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국민대우와

같은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보장되고 있음

○ 사회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주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된 점이 주목할 만함. 그밖에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조치 및 심신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립과 출입국 및 이민법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의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 비록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

Ⅳ. 정책 제언

□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음.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함.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음.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함

○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음.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음.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함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됨.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함.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도 중요함.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함.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함

○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함

-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과)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함
-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가 필요함

○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함.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함.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함

○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지 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부 대책

2005. 7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부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 사회적 합의과정 선행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의 빈곤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비 수급 빈곤층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

□ 사적 이전소득 산정실태 파악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일부를 당해 가구에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산추정을 위하여 **사적이전소득 산정 실태 파악 추진**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 가구가 수급신청시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현금급여 산정시에도 보충급여 원리상 **현금급여 기준선에서 당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 입법례 등 외국사례 파악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적용 **입법례,**

운영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하여 수집

□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사적이전소득 실태 및 해외사례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방안

□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음

○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혼인 증명시 지역보험 단독가입, 동일세대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절차의 문제는 없음

※ 직장인은 강제가입토록 건강보험법 개정('06.1 시행)

⇒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가입 못하는 사례 방지

· 각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 배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출입국관리소 및 대사관 등으로 배포처 확대

□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포함

○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실시(복권기금 46억원)

○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등에서 시행중

⇒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도 무료진료 혜택을 받도록 확대(민간단체 의뢰 연계)

□ 질병관리 및 정신·심리적 관리방안 마련

○ 이주여성에게 특히 이환율이 높은 질환,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내 관리는 부족한 상황임

⇒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방안 검토

- 기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여 이주여성대상 프로그램 제공

⇒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및 확대

- 전국정신보건센터의 상담전화(1577 - 0199), 전국 269개 정신과 clinic의 월 1회 우울증 무료상담 서비스 홍보
-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상담하는 방안 검토
- 종교집회, 이주여성상담소, 자조집단 및 각국 이주민의 날 등 이민자 Community 요청 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 파견(신경정신의학회 협조)

⇒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06년 20개 보건소) 사업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

□ 외국인 진료병원 홍보 강화

○ 이주여성은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

○ 전국 20여개 병원이 외국인 전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사소통·병상운영 등에 있어 외국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방안 마련중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기준 마련하고('05) 국립대학, 우수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06)

・전용 병상 확보, 영수증/처방전 영문발급, 종사자 영어교육 강화 등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이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언어소통 및 문화간 이해를 위해 각 기관별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민자 자조그룹,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마련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

【 참고자료 1 】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에 대한 동법의 적용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은** 당해 가구에의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보아야** 하며

-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일반가구보다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최저생활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

□ 외국인여성 배우자 가구의 현황

○ 외국인여성 배우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 소득현황 >

가구소득	전체 (N=945)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 이주여성가구 (n=344)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95,396**	**74.9**
본인	415,677	27.9	87,960	33.7
남편	529,773	35.5	106,030	40.6
기타가구원	20,559	1.4	1,405	0.5
이전소득	**13,563**	**0.9**	**10,108**	**3.9**
정부지원금	7,555	0.5	9,300	3.6
친지・민간	6,008	0.4	808	0.3
자본소득	**24,894**	**1.7**	**409**	**0.2**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09**	**0.0**
기타소득	**470,758**	**31.5**	**55,025**	**21.1**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261,046**	**100.0**

< 재산현황 >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8세 이 하자녀가 있는 빈곤가구
부채		1,755	1,571
부동산(주택, 토지 등)		7,554	4,622
전세・월세 등 보증금		1,855	985
동산(금융자산)		2,584	662
	있음	**33.8**	**15.9**
	800cc 미만	3.6	2.7
	800-1500cc	9.7	5.3
자동차	1500-2000cc	11.9	3.3
	2000cc 이상	8.6	4.6
	없음	**66.2**	**84.1**
	계	100.0	100.0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의 가구 규모 :** 전체가구의 52.9%

-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57.5%

○ **18세미만 아동가구 중 수급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추정**

< 수급대상자 규모 >

구 분			수급대상자 규모(명)	백분율(%)
전체규모			13,851	20.7
	수급자		3,145	4.7
		귀화자(A)	1,405	2.1
		비귀화자(B)	1,740	2.6
	비수급자		10,706	16.0
		귀화자(C)	3,346	5.0
		비귀화자(D)	7,360	11.0

< 소요예산 >

(단위: 천원)

분 류	월 평균 현금급여액	현금급여	교육 및 의료급여	연간 총 소요예산
수급자중 비귀화자 분 급액 추가[1]	192	4,008,960	2,427,840	6,436,800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2]	856	75,601,920	53,080,482	128,682,402
귀화자 수급비율을 적용한 비귀화 비수급자[3]	856	22,351,872	15,711,823	38,089,991

1) 수급자중 비귀화 가구원(이주여성)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할 때 가구원 1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지급액수가 늘어났을 때 가구당 월 평균수급액수와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한 것이다.
추가지급액=$[(P_{n+1})-P_n]\times 0.88$
P_{n+1}은 가구원 1명이 추가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P_n은 가구원 1명 추가이전의 최저생계비
0.12는 최저생계비중 타 지원금의 삭감 비율(대략 12%수준임)

2) 비귀화 비수급자 전체는 소득기준 전체 대상자중 비수급 미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현금지급액=$[P_{n+1}-(P_{n+1}\times 0.12]-I_h$
P_{n+1}은 이주여성을 수급대상 가구의 가원으로 포함했을 때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
0.12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금을 공제되는 비율
I_h은 이주여성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외한) 현재 소득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을 100%로 계상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귀화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29.6%만을 비귀화 비수급자에게 적용해 비수급 비귀화자 중 29.6%인 2,176가구만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월 평균 지급액과 연간 총 예산 규모.

【 참고자료 2 】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4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1990-2004	5,568,489	197,634	3.5	128,762	2.3	68,872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